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일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신설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함(안 제5조제2항)
- 나. 개방화장실 개방시간 범위 추가 (안 제12조제2항)
- 다. 개방화장실의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사항 추가(안 제13조)

라.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서식 변경(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3. 7. 13. ~ 2023. 8. 2.(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5) 법제심사 결과 : 안 일부수정(검토의견 반영)

구 분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여부
문서양식	용지여백 수정	반영
제5조제2항	“안전관리시설”을 “안전관리 시설”로 수정권고	반영
	2.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하 공공기관 또는 시설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수정권고	반영
제7조제2항	“실시 할 수 있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권고	반영
제13조	“안전관리시설”을 “안전관리 시설”로 수정권고	반영
별지 제1호서식	별지로 추가 “안전관리시설”을 “안전관리 시설”로 수정권고	반영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를 “비용 발생 요인은 존재하나 총 비용 발생요인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 로” 수정권고	반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편의와”를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으로 한다.

제4조 중 “이용자에게 편의를”을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하 공공기관 또는 시설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실시 할 수 있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화장실은”을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고,”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으로 하고,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을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유지관리비, 그 밖의 비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년도	관리책임 공무원			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급				
	관리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 시설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u>위생편의와</u>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u>이용자에게 편의를</u>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u>별표</u>에서 정한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u>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u>----- -----.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u>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u> ---- ----- -----. 제5조(설치기준) ①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u>제6조</u>----- -----

현 행	개 정 안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신 설)	----- -----. 1. ~ 5.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u> <u>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u> <u>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하 공공기관 또는 시설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u> <u>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u>
제6조(위탁관리 등) ① <u>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u>	제6조(위탁관리 등) ① <u>구청장</u>----- -----

현행	개정안
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 ----- -----.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u>실시할 수 있다.</u>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실시할 수 있다.</u>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u>화장실은</u>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u>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고,</u>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u>편의위생용품의 지원</u>) 구청	제13조(<u>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u>) 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발생
 - 비상벨 설치비 : 8개소(비상벨 미설치 화장실) $\times$ 1,100천원 = 8,800천원
 - 연 통신비 : 8개소 $\times$ 5,500원 $\times$ 12월 = 528천원
- * 단, 비상벨 설치단가는 화장실 설치장소, 기계 기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약 1,000~2,5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은 존재하나 총 비용 발생요인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안전생활국 청소행정과장 박 홍 진